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2025. 6. 13.(금) 10:30
본 회 의 장

심사결과보고서



완도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제3416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6. 허궁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5. 6. 9.

다. 상정일자 : 2025. 6.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6조제3항)

- 자녀돌봄, 육아 등 특별휴가 지원대상 및 범위 개정

(5세 이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인당
24개월 → 36개월)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 반영(안 제16조제8항)
 -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이 불가
- 별표 4 경조사별휴가일수표
 - 출산 : 배우자(한번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0일 → 20일(25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 1일 → 3일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1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0조제3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각각 “**3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의 후단 중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을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군정업무**”를 “**의정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1항----- ----- ----- -----. ----- ----- ----- --.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별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5조(병가) ① ----- ----- ----- -----. ----- ----- ----- ----- 제14조제2항----- ----- ----- ----- --.
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⑨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 ----- 36개월-----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에는 시간외근무 사용을 할 --
--.

⑨ -----

----- 의정업
무-----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⑩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

-----.

<삭 제>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번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2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 련 법 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3417호】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6. 허궁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5. 6. 9.

다. 상정일자 : 2025. 6.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회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안 제7조 및 제8조)
- 협력체계 및 포상(안 제9조 및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완도군의회 소속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무와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 등”이란 완도군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의장의 책무)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방향과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연구 및 조사 사업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 등에게 「완도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행정자치위원회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제3419호】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6. 박재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6. 9.

다. 상정일자 : 2025. 6.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대상 가구(안 제5조)
- 사업 추진(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읍면별로 복지기동대를 편성하여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수리 등 촘촘한 생활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군 및 읍·면 단위로 구성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제3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와 협력하여 군 및 읍·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

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지원
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운영) 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군 및 읍·면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읍·면의 대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의 대원은 읍·면의 대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읍·면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가스·주택 설비 종사자
3. 우편집배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가구)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치유 프로그램

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

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완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면, 공공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

례 시행 전에 설치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으로 본다.

【의안번호 제3420호】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6. 최정욱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6. 9.

다. 상정일자 : 2025. 6.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재정지원(안 제7조)
- 전문 인력의 양성(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실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완도군민을 인성교육 실시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또는 완도군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6. 9.

다. 상정일자 : 2024. 6.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신규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제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4급·5급 직제 변경
 - 관광과 5급 → 관광실 4급
 - 해양치유담당관 4급 → 해양치유담당관 5급
- 2026 PRE해조류박람회 및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부서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고,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담당관·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을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 및 소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실·담당관·과의 설치)”를 “(실·담당관·과·추진단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인구일자리정책실, 관광실”로, “경제교통과, 관광과”를 “경제교통과”로, “수산경영과”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담당관·과”를 “실·담당관·과·추진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광실,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해

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4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③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보건의료원장과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을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보건의료원장과 관광실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당연직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은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 완도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관광과장”을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 인규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⑦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⑧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농업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관광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을 “**관광실장, 농업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으로 한다.

⑨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관광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⑩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해양치유담당관, 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⑪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해양치유담당관,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⑫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⑬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3. 관광실장

⑭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장·담당관·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의료원장,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면장·출장소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 및 소장의 직급 등) -----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 ----- ----- ----- ----- ----- ----- --.
제4조(실·담당관·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u>경제교통과</u>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u>수산경영과</u> ,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실·담당관·과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실·담당관·과·추진단의 설치) ① ----- 인구일자리정책실, <u>관광실</u> ----- ----- ----- <u>경제교통과</u> ----- ----- -- <u>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u> ----- ----- ② 실·담당관·과·추진단----- ----- --.

【의안번호 제342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6. 9.

다. 상정일자 : 2024. 6.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1(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5급 35명 → 36명(본청1명 증)
 - 본청 6급 이하 667명 → 665명(2명 감소)
 - 의회 6급 이하 15명 → 16명(1명 증가)
- 별표 3(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개정
 - 6급 27%이내 → 28%이내
 - 7급 33%이내 → 32%이내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 채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정원 총량에는 변동없이 조직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및 6급 정원 조정과 6급 및 7급의 정원 비중을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수정안** 1부. 끝.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3				18
정 무 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 반 직	소 계	723	705				18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5	17	2	1	12	3
	6급 이하	682	667				15
	전문경력관	1	1				-
연 구 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 도 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 정 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3				18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3	705				18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681	666				15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2				19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3	704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별표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이내	5%이내	27%이내	33%이내	22%이내	11%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	연구관	연구사	계	지도관	지도사
100%	10%이내	90%이상	100%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100%			100%		

[별표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이내	5%이내	28%이내	32%이내	22%이내	11%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	연구관	연구사	계	지도관	지도사
100%	10%이내	90%이상	100%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100%			1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3					18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	-	-	-			
일반직	소	계	723	705					18						
	3급		1	1	-	-	-	-	-	-	-	-			
	4급		1	-	1	-	-	-	-	-	-	-			
	4내지5급		3	3	-	-	-	-	-	-	-	-			
	5급		35	17	2	1	12	3							
	6급 이하		682	667					15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2					19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	-	-	-			
일반직	소	계	723	704					19						
	3급		1	1	-	-	-	-	-	-	-	-			
	4급		1	-	1	-	-	-	-	-	-	-			
	4내지5급		3	3	-	-	-	-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별표 3〕

〔별표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 이내	5% 이내	27% 이내	33% 이내	22% 이내	11% 이상	1% 이내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 이내	5% 이내	28% 이내	32% 이내	22% 이내	11% 이상	1% 이내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6. 9.
다. 상정일자 : 2024. 6.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 시행의 적정성 결과 적격 심의의결 가결됨에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 거
 -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위탁개요
 - 위탁 시설 현황 및 지원규모

- 위탁시설 :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 시설규모 : 지상 3층(연면적 3,291㎡)
- 시설내용 : 행정실, 공동실험실, 미생물 및 동물세포 실험실, 홍보실, 라이브러리, 대회의실, 사무실 40개실, 시험·분석장비 등
- 수탁기간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사무 : 연구소 운영 관리 전반
- 지원규모 : 200,000천원 / 년

● 연구소 주요 사업 내용

- 해양수산·바이오분야 부설연구소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지원·육성 분야의 전문성 확보로 입주기업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입주기업에 자금지원 프로그램 연결, 수출 및 판로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 부설연구소 및 스타트업 활성화 도모
- 해조류, 전복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특화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 해양바이오 전문가, 컨설턴트, AC, R&D 기관 전문가, 수산 식품 분야 대기업 임직원 등 초청 강의 및 네트워킹 활성화
- 대학, 어업인 2세 등을 대상으로 연구소 홍보를 통한 입주 유도

다. 민간위탁 방법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기간 연장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25. 5. 13.) 결과, 평정 87.3점으로 재계약(위탁기간 2년 연장) 적격 및 심의의결 가결

라. 책임한계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마. 민간위탁 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2025. 7. 1. ~ 2027. 6. 30.)

바. 지도·감독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의견: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6. 9.

다. 상정일자 : 2024. 6.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나. 총괄내역

- 취 득

(단위 : 필지·동, m², 백만원)

[illegible]

● 처 분

(단위 : 필지·동, m², 백만원)

구분	당 초			변 경 후			증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합계	2	2,314	317	2	2,314	317	-	-	-
토지	2	2,314	317	2	2,314	317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다. 세부내역

안건 번호	제출부서	안 건 명	비 고
계		27건 (토지취득 26건, 건물취득 1건)	
제1호	농업축산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잔여부지 매입 ▶ 토지취득 - 1필지(1,803m ²), 115백만원 ▶ 건물취득 - 1동(330m ²), 53백만원	
제2호	건 설 과	완도 화흥 간척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 토지취득 - 13필지(42,014.7m ²), 1,200백만원	
제3호	보건행정과	소안 응급의료 헬기이착륙장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 ▶ 토지취득 - 2필지(2,713m ²), 57백만원	
제4호	지역개발과	어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망남항 부지 매입 ▶ 토지취득 - 1필지(1,163m ²), 85백만원	
제5호	산림휴양과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 토지취득 - 2필지(1,394m ²), 11백만원	
제6호	경제교통과	완도 미르채 센텀시티 아파트 준공에 따른 진·출입로 및 주차장 기부채납 ▶ 토지취득 - 7필지(1,910m ²), 438백만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의견: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금당행복의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5. 27.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5. 6. 9.
- 다. 상정일자 : 2024. 6.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해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동준)의 위탁해지 요청에 의해, 금당행복의집 위탁운영 기간이 2025. 7. 31.로 종료됨에 따라,
- 금당행복의집 관리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위탁운영)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금당 행복의집
 - 시설위치 - 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941번길 41
 - 시설규모 - 196㎡ / 9인시설
 - 시설내용 - 사무실, 침실4, 주방, 목욕탕, 상담실 세탁실 등

● 위탁사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에 관한 업무
-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인지 기능 유지, 영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
 - 건물 및 비품의 유지·보수,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 종사자 및 입소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고 및 이용자 복지 증진 업무 등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다. 수탁자 선정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라. 책임한계 :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마. 지도·감독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며

수탁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 할수 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의견: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산업건설위원회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 제3426호】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5. 26. 지 민 의원
- 나. 회부일자: 2025. 5. 26
- 다. 상정일자: 2025. 5. 26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5조)
- 재정지원(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행정 및 민간에서 활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 이후 발생하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

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완도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427호】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6. 허 공 희 의원

나. 회부일자: 2025. 5. 26

다. 상정일자: 2025. 5. 26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산불방지대책 수립(안 제5조)
-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완도군 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완도군 내 다중집합 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방지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완도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관련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 활동 홍보
3. 군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산림인접지역의 태우기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5.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 진화 활동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

제8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428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6. 9.

다. 상정일자: 2025. 6.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해당 조례 내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안 제4조제1항제3호)
-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4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감축계획에 따른 구비서류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업자 인감증명서**”를 “**사업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인 <u>등기부등본</u> 또는 사업 자등록증	3. --- <u>등기사항증명서</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u>사업 자 인감증명서</u>	5. ----- <u>사업 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현 행

[별표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 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업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완 도 군 수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3. 주주총회 결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 인감증명서					

붙임 2

개 정 안

[별표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 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업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완 도 군 수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3. 주주총회 결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의안번호 : 제3429호】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6. 9.

다. 상정일자: 2025. 6.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비 10분의 6 초과 금지(안 제5조 제5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조례 위임사항 반영(안 제22조)
 -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중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례안 제22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수정안 1부. 끝.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 관련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

나. 교육시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u>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u>위촉한다.</u>	⑤ ----- ----- <u>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 ① <u>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	제22조(교육) ① <u>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 관련 면허 · 허가 · 인가 ·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

나. 교육시기: 면허 · 허가 · 인가 ·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

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
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

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 교육은 -----
-----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
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관한 법령 및 정책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삭 제>

③ 군수는 제1항-----
----- 의뢰하거나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위탁-----.

④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 관련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	가. 교육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 관련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
나. 교육시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나. 교육시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라.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2. 교육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
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
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
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3)까지의 사항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2. 교육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
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
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
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

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단서조항 신설〉

1.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 제>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 기관등에 의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

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 제>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 기관등에 의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안번호 : 제3430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6. 9.

다. 상정일자: 2025. 6.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과 법령-자치법규간 용어 통일을 위해 상위법령의 대체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장애인수첩 → 장애인등록증(안 제8조제1항제4호)
- 신체적·정신적 상태 관련 용어 삭제(안 제9조제2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용어정비는 타당하지만,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인용하여 상위법령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수정안 1부. 끝.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u>장애인수첩</u> 을 소지한 사람 5. ~ 16. (생략) ② (생략)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장애인등록증</u> ----- 5.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생략) 2. <u>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u> 3. ~ 5. (생략)	제9조(관람의 금지)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표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전래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징수 및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u> ----- ----- -----.
제3조(공개 및 매표시간) ① 윤선도원림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한다.	제3조(공개 및 매표시간) ① ----- ----- <u>「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 제3431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6. 9.

다. 상정일자: 2025. 6.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에 규정된 연봉 한도액 인상에 대한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선수등급 및 연봉상한액 인상을 통해 우수선수 유지와 신규 영입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국체전 2위와 3위 간의 등급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급 산정 기준표’의 S급(1위)과 A급(2~3위)을 SS급(1위), S급(2위), A급(3위)으로 구분함.
- 연봉의 심의범의에 상하한액을 인상하고, 성과연봉을 도입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비 10분의 6 초과 금지
(안 제6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등급을 체계화하고 연봉상한액을 인상하여 우수선수 유지와 신규인재 영입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타시군 역도실업팀에 비해 연봉과 수당 등이 열악하여 선수등급과 연봉상한액 인상을 통해 우수선수를 영입해야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 별표 2 연봉의 심의범위만 소급적용을 하였으나, 별표 1 단원의 등급 산정기준도 함께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수정안 1부. 끝.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에 따른 별표 2 연봉의 심의 범위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6조(운영위원회) ② -----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1]

단원의 임용 시 등급산정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등 급 산 정 기 준
지도자	A급	- 국제대회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 전국체전 1회 이상 상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B급	- 전국대회 2회 이상 상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C급	- 전국대회 상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선 수	S급	- 국제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전국체전 1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대표인 사람
	A급	- 전국체전 상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전국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대표 상비군인 사람
	B급	- 전국대회 2회 이상 상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경기부의 주전급으로 지도자가 추천한 사람
	C급	- 전국대회 1회 이상 상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주니어 대표 선수로 2년 이상 경력자
	D급	- 대회별 상위진입이 가능한 유망주

[별표 1]

단원의 임용 시 등급산정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등 급 산 정 기 준
지도자	A급	- 국제대회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 전국체전 1회 이상 상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B급	- 전국대회 2회 이상 상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C급	- 전국대회 상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선 수	SS급	- 국제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전국체전 1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대표인 사람
	S급	- 전국체전 2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A급	- 전국체전 3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전국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대표 상비군인 사람
	B급	- 전국대회 2회 이상 상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경기부의 주전급으로 지도자가 추천한 사람
	C급	- 전국대회 1회 이상 상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주니어 대표 선수로 2년 이상 경력자
	D급	- 대회별 상위진입이 가능한 유망주

[별표 2]

연봉의 심의범위(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직책	등급	연봉		비고
		하한액	상한액	
지도자	A급	48,000	53,000	
	B급	43,000	48,000	
	C급	38,000	43,000	
선수	S급	48,000	70,000	
	A급	43,000	48,000	
	B급	38,000	43,000	
	C급	33,000	38,000	
	D급	28,000	33,000	

붙임 4

개 정 안

[별표 2]

연봉의 심의범위(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직 책	등 급	연 봉		비 고
		하 한 액	상 한 액	
지도자	A급	50,000	60,000	
	B급	43,000	50,000	
	C급	38,000	43,000	
선 수	SS급	60,000	70,000	
	S급	50,000	60,000	
	A급	44,000	50,000	
	B급	39,000	44,000	
	C급	34,000	39,000	
	D급	28,000	34,000	

○ 다음 각 호의 단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액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성과 연봉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전국체전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여 아래와 같이 상위 입상한 선수
-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를 육성한 실적이 있는 감독

지급기준표(전국체전)				(단위:천원)
구 분	1개	2개	3개	지급율
금메달	24,000	27,000	30,000	80~100%
은메달	13,500	15,000	16,500	45~55%
동메달	3,000	4,500	6,000	10~20%

* 입상결과(메달)의 반영은 상위 등급만을 반영함.

[별표 3]

지도자 및 선수수당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액	비고
훈련수당	지도자 및 선수	매월	200,000	
급식비	지도자 및 선수	매월	300,000	
목욕비	지도자 및 선수	매월	100,000	
명절수당	지도자 및 선수	연2회	300,000	설날, 추석
국가대표수당	국가대표 선발 선수	매월	300,000	
신기록수당	국제기록 수립 선수	1회	1,000,000	
	국내기록 수립 선수	1회	500,000	

[별표 3]

지도자 및 선수수당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액	비고
훈련수당	지도자 및 선수	매월	200,000	
급식비	지도자 및 선수	매월	300,000	
목욕비	지도자 및 선수	매월	100,000	
명절수당	지도자 및 선수	연2회	600,000	설날, 추석
국가대표수당	국가대표 선발 선수	매월	300,000	
신기록수당	국제기록 수립 선수	1회	1,000,000	
	국내기록 수립 선수	1회	500,000	

[별표 4]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일/원)

계	숙박비	급식비	교통비	목욕비	간식비	비고
100,000	40,000	20,000	20,000	10,000	10,000	

붙임 8

개 정 안

[별표 4]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일/원)

계	숙박비	급식비	교통비	목욕비	간식비	비고
130,000	70,000	20,000	20,000	10,000	10,000	

[별표 5]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6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금(1위)	은(2위)	동(3위)	비 고
올 림 픽 계 임	7,000	5,000	3,000	보상금 지급횟수는 연 5회로 제한
아 시 안 계 임 세 계 선 수 권 대 회	3,000	2,000	1,000	
기 타 국 제 대 회 및 전 국 체 전	1,000	700	500	
전 국 체 육 대 회 (전 국 체 전 제 외)	700	500	300	
그 외 대 회	500	300	200	

※ 지급대상 :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전국대회 이상을 적용)

※ 지급방법

- 선수는 획득한 성적 중 최고의 성적으로 지급한다. 단, 전국체전의 경우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지급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은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종목은 100분의 50만 지급한다.
- 지도자는 최고성적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별표 5]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6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금(1위)	은(2위)	동(3위)	비 고
올 림 픽 계 임	7,000	5,000	3,000	보상금 지급횟수는 연 5회로 제한
아 시 안 계 임 세 계 선 수 권 대 회	3,000	2,000	1,000	
기 타 국 제 대 회 및 전 국 체 전	1,500	1,000	700	
전 국 체 육 대 회 (전 국 체 전 제 외)	1,000	700	500	
그 외 대 회	500	300	200	

※ 지급대상 :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전국대회 이상을 적용)

※ 지급방법

- 선수는 획득한 성적 중 최고의 성적으로 지급한다. 단, 전국체전의 경우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지급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은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종목은 100분의 50만 지급한다.
- 지도자는 최고성적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의안번호 : 제3432호】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6. 9.

다. 상정일자: 2025. 6.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과 법령-자치법규간 용어 통일을 위해 상위법령의 대체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신체장애자용 → 신체장애인용(안 제2조제3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u>신체장애자</u> 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 ----- ----- ----- <u>신체장애인</u> <u>용</u> -----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 제3433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6. 9.

다. 상정일자: 2025. 6.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를 재난예방에 대한 조치가 가능토록 개정
(안 제6조제1항제9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
(안 제10조제2항, 안 제10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재난예방에 대한 조치가 가능토록 개정하고,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긴급대응”을 “예방·대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포함한”을 “포함한 10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금관련 부서장”을 “기금 및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와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 등의 재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제7항 중 “예방복구업무”를 “자연재난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9.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예방·대응</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한</u> 위원으로 구성한다. <u>이 경우 군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 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u>임명하거나 위촉</u>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포함한 10명 이내의</u> ----- ----. <u>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u>

1. <u>기금관련 부서장</u> 2. <u>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u> 3.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 ⑤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예방복구업무</u> 팀장이 된다.	1. <u>기금 및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u> 2. <u>기금 등의 재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 3. <u>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자연재난업무</u> -----.
---	--